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주)○○ 근로자가 작업장내에서 휴식중 갑자기 쓰러져 상병명 “소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89-12호 89.1.23. 취소)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이 ○○

주소 : 경남 진해시 여좌동 2가

원처분청 : 마산 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

성명 : 김 ○○

주소 : 경남 진해시 여좌동

피재근로자

성명 : 김 ○○

주소 : 경남 진해시 여좌동

소속 : 주식회사 ○○

주 문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88. 11. 18 자 피재자 김○○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재심사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 11. 18 자 피재근로자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

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재자는 주식회사 ○○소속 상용 근로자로서 근무중 1988. 10. 4. 12:30경 사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작업장내의 빈터에 누워 휴식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긴급 이송 컴퓨터 두부 단층촬영결과 고혈압에 의한 “소뇌출혈”로 판명되어 응급 개두 실시 후 요양중이므로 원처분청에 보험법 제9조의 3에 의거 요양신청 하였으나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의 재해를 업무외 재해로 인정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피재자의 형 김○○는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면서 피재자의 상병명은 노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피재자의 재해를 업무외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 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 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 및 이유서
(1988. 12.29. 이○○)
2. 원처분청 의견서
(1988. 1. 5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
(1988. 12. 21. 홍○○)
4. 요양신청서
(1988. 10. 9. 김○○)
5. 소견서
(1988. 10. 17 고려병원 의사 박○○)
6. 요양불승인 통보
(1988. 11.19.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
7. 조사 복명서
(1988., 11. 18. 구○○)
8. 소견서
(1988. 12. 6 고대병원 의사 박○○)
9. 진술서
(1988. 11. 1 김○○)
10. 기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 하건대, 피재자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중 1988. 10. 4. 12:30경 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작업장내의 빈터에 누워 휴식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긴급이송 컴퓨터 두부 단층촬영결과 고혈압에 의한 “소뇌출혈”로 판명되어 응급개두 실시후 요양중이므로 원처분청에 요양신청을 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의 재해를 업무의 재해로 인정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 피재자의 근무형태는 평소 주간근무로 08:30부터 17:30까지 8시간 근무를 하나 때에 따라 연장근로하며 작업내용은 자동차부품 사상작업 및 포-크 연마작업이 주종이고 그외 부품세척 및 포장작업이며 동료 근로자 강○○ 및 설○○등의 진술에 의하면 “작업과정에 신경을 많이 쓰인다”고 하였으며,

둘째 : 피재전 3개월간 연장근로 현황을 살펴보면 7월은 26일 근무중 51시간, 8월은 25일 근무중 39시간, 9월은 26일 근무중 42시간을 연장 근로하므로서 하루 평균 약 1.7시간을 연장근무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

셋째 : 피재자의 상병상태에 대한 마산고려병원 주치의 소견을 살펴보면 “소뇌출혈의 발생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과로시에 발생할 수도 있음. 상환자의 경우 작업내용과 과정에 있어서 질병발생이 노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며 그 질병의 발현 및 진행 또는 노동과 연관이 있다고 사료됨”임이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는 작업내용이 사상작업 및 연마작업으로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작업이며 피재전 3개월간 1일 약 1.7시간을 연장 근로하므로서 피로가 누적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 피재자의 상병상태에 대한 주치의 소견도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건 피재자의 상병명 “소뇌출혈”은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주)○○사 근로자가 머리가 아파 휴식을 취하러 가던 도중 쓰러져 상병명 “1)뇌동정맥 기형 2)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 결 서

재심사청구인

성명 : 장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개봉2동

원처분청 : 서울 남부 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장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개봉2동

피재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주)○○사

주 문

노동부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89.2.13.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장○○”(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노동부 서울 남부 지방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9. 2. 13. 자 피재근로자 “장○○”(이하 “피재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재자는 주식회사 ○○사 소속 근로자로서 1989. 2. 23. 16:30분경 동사 연수원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연수원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려 가다가 복도에서 사람을 부르면서 쓰러진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하여 순천향 구미병원으로 이송 상병명 “(1) 뇌동정맥 기형 2)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으로 진단되어 원처분청에 요양 신청하였던 바 피재자의 동상병은 선천성인 뇌동맥기형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상병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상 과로나 긴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원처분청 의견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피재자는 1987. 11월 중에 입사한 사원으로서 3급 신입자 담당교관과 사보기자를 겸직하고 있었으며 재해 발생 당시는 연수원 교육성과 측정에 관한 자료 준비, 논문작성, 4월초 예정인 세미나 주제발표 준비, 2분기 신입관리자 교육 사전준비 및 프로그램 작성중에 있었고 1988. 3. 12. 및 동년 3월 14일에는 교육성과측정에 관한 논문작성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등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로가 겹쳐, 뇌출혈을 유발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상병 “(1)뇌동정맥 기형 2)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
(1989. 4. 21. 장○○)
2. 원처분청 의견서
(1989. 4. 25.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
(1989. 3. 10. 홍○○)
4. 요양결정결의서 사본
(1989. 2. 13.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5. 요양신청서 사본
(1989. 1. 5. 장○○)
6. 소견서 사본
(1989. 3. 7. 노동부자문의 김○)
7. 소견서 사본
(1989. 2. 충무병원장)
8. 재해조사 복명서 사본
(1989. 2.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윤○○)

9. 문답서 사본
(1989.1.31.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윤○○)
10. 진단서 사본
(1988. 5. 2. 순천향구미병원장)
11. 진단서 사본
(1988. 12. 26. 고대부속 구로병원장)
12. 신체검사서 사본
(1987. 12. 장○○)
13. 연수원과정 운영계획 사본
(1988. 1, 2, 3월분)
14. 확인서 사본
(1989. 2. 16. 대표이사 최○○)
15. 확인서 사본
(1989. 2. 연수원 운영과장 박○○)
16. 기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피재자의 상병명 “1)뇌동맥 기형 2)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건대,

첫째 : 피재자의 발병후 최초 입원치료한 바 있는 순천향 구미병원 진단서를 보면 상병명이 “1)뇌동맥 기형 2)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이고 전원 요양중인 고대부속 구로병원 주치의 소견은 “뇌동맥 기형이 있어 뇌출혈성 소인이 있었던 중에 뇌출혈이 생겨 좌측상지와 양측하지의 마비가 생긴 상태임”으로서 피재자의 발병원

인은 기존 질환인 뇌동맥 기형이 파열되어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을 일으킨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둘째 : 피재자의 뇌동맥 기형의 파열요인과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알기 위하여 피재자의 야행업무 및 근무상태를 검토한 결과 피재자는 동사 구미연수원 3급 신입자 담당교관과 사보기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로서 재해발생 당시 통상적으로 08:30부터 20:30까지 근무하였고 연수원 교육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논문 준비를 위하여 자료수집차 1989. 3. 12일과 동년 3. 14일에 대구지역 2개 대학에 출장을 갔던 사실 등으로 보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현저하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입사원 특유의 정신적 긴장까지 겹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과 피재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로 보아 피재자는 출혈성 소인이 있는 “뇌동맥 기형”의 기존질환의 소유자로서 과격한 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가중되어 기존질환인 “뇌동맥 기형”이 파열됨으로서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이 발병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보험법 제 3조의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